

『인천광역시 환경·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월 27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환경·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 부분만을 존치하고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부분을 삭제하여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
- 나.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에 의거 유사 중복기능 위원회의 통합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항 개정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인천광역시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나.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함.(안 제3조)

- 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12개 분야/33개사업)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사업의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을 정함 (안 별표 1 및 별표 2).
- 라.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 등에 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준용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5,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환경·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환경·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환경·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 환경영향평가의 심의·자문은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환경영향평가법과의 관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 등에 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 제12조, 제15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 및 제45조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및 제34조 중 “환경부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환경·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를 절차가 진행 중인 평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작성 또는 협의 요청하거나 재협의를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별표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1)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2)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3) 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 라.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사업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사업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2. 산업 입지 및 산업 단지 의 구성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사업 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사업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사업. 다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사업 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사업.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 및 입주계약 등의 완료 전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3.에너지 개발	가. 「광업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광업 중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하는 광 업으로서 채광면적이 15만㎡이상 30만㎡미만인 사업 나.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중 저유시설의 설치공 사로서 저장용량이 5만kl 이상 10 만kl 미만인 사업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 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5만kl 이상 10만kl 미만인 사업.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 계획의 인가 전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가 전
4.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조제1호,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 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업 1) 3km 이상 4km 미만의 신설(「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m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만 해당한 다. 다만, 「도로법」 제8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 2항제1호나목·바목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 및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 에 의한 신설도로의 건설사업중 다음 사업 2) 2차로 이상으로서 5km 이상 10km 미만의 확장	가)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관리청 이 시행하는 경우 : 같은 법 제 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나)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관리청 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 같 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사 시행 의 허가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 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 시계획의 인가 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다음의 구역에서 하는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길이로 5km 이상 10km 미만인 사업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 구역 2)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 구역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가 시행하는 경우 :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경우 : 「하천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 다)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전
6.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매립사업 중 사업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인 사업 2) 그 밖의 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사업면적이 50만㎡ 이상 100㎡ 미만인 사업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매립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전 나) 그 밖의 자가 매립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전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7. 관광 단지의 개발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다. 「온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온천 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 개발계획의 승인 전
8. 산지 개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산지전용면적이 10만㎡ 이상 20만㎡미만인 사업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
9. 특정 지역의 개발	1호부터 8호까지, 10호부터 12호까지 사업 중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10.체육 시설의 설치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 나.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전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 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 허가 전
11.폐기물처리 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12. 토석 모래·자 갈·광물 등의 채취	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훼손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나. 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1km 이내의 지역과 바다쪽으로 10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법」에 의한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의 단위구역당 광물채취면적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인 경우. 다만, 태풍·폭풍·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긴급 대책상 필요하거나 항만 및 어장의 유지·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다. 골재채취법」 제221조에 따라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 구역당 채취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 이거나 채취량이 25만㎡ 이상인 50만㎡ 미만인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는 제외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나) 위 가)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인 경우 (1) 광물채광의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전 (2) 토석채취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또는 협의·승인 전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전

비고 :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 시기 중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2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 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얻고자 하는 시기로 한다.
4. 평가대상규모 미만이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준공 후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의 규모가 증가하여 평가대상규모에 달한 때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제1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2인 이상이 시행하는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2]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제2조제2항 관련)

1. 대기환경 분야

- 가. 기상
- 나. 대기질
- 다. 악취
- 라. 온실가스

2. 수환경 분야

- 가. 수질(지표·지하)
- 나. 수리·수문

3. 토지환경 분야

- 가. 토지이용
- 나. 토양
- 다. 지형·지질

4. 자연생태환경 분야

- 가. 동·식물상
- 나. 자연환경자산

5. 생활환경 분야

- 가. 친환경적 자원 순환
- 나. 소음·진동
- 다. 위락·경관
- 라. 위생·공중보건
- 마. 전파장해
- 바. 일조장해

6. 사회·경제 분야

- 가. 인구
- 나.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산업

관련법령 검토 및 발체사항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 제5조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제10조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 등의결정) ○ 제12조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 제15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및 의견제수렴) ○ 제16조 (평가서에 대한 협의요청 등) ○ 제17조 (평가서의 검토·보완) ○ 제18조 (협의내용의 통보 등) ○ 제19조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 제20조 (이의신청) ○ 제21조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등) ○ 제22조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 제23조 (협의내용의 이행 등) ○ 제24조 (사후환경영향조사) ○ 제25조 (협의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 제26조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 제27조 (사업의 착공·준공·중지의 통보) ○ 제28조 (사전공사 시행의 금지) ○ 제29조 (환경영향에 대한 재평가) ○ 제30조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 여부의 결정) ○ 제32조 (의견수렴 내용 등이 반영된 평가서의 작성·제출) ○ 제45조 (평가서등의 공개)
-------------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23조(평가서의 제출 및 협의요청 시기 등) ○ 제26조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 제27조 (사업의 착공·준공·중지의 통보) ○ 제28조(이의신청심의회위원회의 구성) ○ 제32조 (의견수렴 내용 등이 반영된 평가서의 작성·제출) ○ 제34조(협의내용의 이행 확인 등 사후관리 결과의 통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없음”
관련자료	“해당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계획서(이하 "평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4조제5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 및 그 범위 등(이하 "평가항목·범위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주도록 승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사업자 자신이 그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기관에 해당되는 경우의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4조제5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제1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사업자는 제2항이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요청을 하려면 평가계획서를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2항이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제1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등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①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0조제3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라 평가항목·범위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이하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는 평가항목·범위등에 관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및 의견제수령) 사업자는 제14조에 따른 의견수령절차를 거친 후 제16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작성과 의견수령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16조 (평가서에 대한 협의요청 등) ① (생략)

- ② 승인기관의 장이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17조 (평가서의 검토·보완)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받은 평가서를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평가서나 사업계획등을 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서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작성내용·작성방법 등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할 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밖에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추가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협의내용의 통보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평가서의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들었을 때에는 그 협의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나 사업계획등을 보완·조정하여 사업계획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를 마치고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완하거나 조정할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기 전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보완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내용이 사업계획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할 때에는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및 그 반영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이의신청)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이의신청심의회를 둔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 그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의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등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등) ① 사업자는 제18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주변여건의 변화가 경미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① 사업자

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제21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거나 검토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사업계획등에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내용"을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제23조 (협의내용의 이행 등)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제21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과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협의내용의 적정한 이행관리를 위하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항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협의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① 사업의 양도, 법인의 합병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사업자는 제23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 등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자가 그 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계를 받은 사업자 또는 시설의 운영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상황과 승계사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④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승인기관의 장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5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사업의 착공·준공·중지의 통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사전공사 시행의 금지) ① 사업자는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절차 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협의 또는 제22조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환경영향에 대한 재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서 평가서의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해당 사업의 착공 후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

당 사업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이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사업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 여부의 결정) ① 사업자가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에게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규모·특성·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31조에서 정하는 간이화(간이화)된 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간이평가절차"라 한다) 대상사업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주도록 함께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에의 해당 여부를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②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간이평가절차에서의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의견수렴 내용 등이 반영된 평가서의 작성·제출) ① 제31조제2항에 따라 의견수렴과 협의를 끝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수렴 내용과 협의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및 그 반영내용을 통보할 때에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평가서등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

원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주민 등이 평가서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 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평가서등에 해당 사업의 특별한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평가서의 제출 및 협의요청 시기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제출 시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서의 제출 부수 및 제출 방식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사업계획등의 통보) 승인기관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을 반영한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의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신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2. 변경하려는 협의내용
3. 협의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제28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신청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의신청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장이 회의마다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의신청심의위원장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의신청심의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3.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 산업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32조(환경보전방안 검토 시 제출서류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
3.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3.9>

1.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시설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2) 및 라목2), 같은 표 제5호,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건설사업(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에 한정한다)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1회의 사업·시설 변경규모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규모 이상인 경우(해당 사업의 공사를 관리하기 위한 임시 현장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그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이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바닥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서 원형보전하도록 한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5.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 통보 시 사업장 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인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협의내용의 변경 시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7.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공정이나 공법 등의 변경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을 들으려는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협의내용의 이행 확인 등 사후관리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등 사후관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